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번호

2026

제출일자 : 2020. 11. 13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각종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나. 구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스마트도시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라.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 ·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- 마.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~제15조)
- 바.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의기관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0. 10. 16. ~ 2020. 11. 5.): 의견없음
- 2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- 3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- 4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- 5) 성별영향분석평가: 의견반영(여성가족과)

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,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(이하 "구민"이라 한다)과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"구"라 한다)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·시설·사업장 등(이하 "사회구성원"이라 한다)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구민과 제2항의 사회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.

제4조(구민의 참여와 협력) ① 구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정책의 결정· 집행·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.

② 구민은 제1항의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,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지역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지역계획(이하 "지역계획" 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-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
- 2.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
- 3. 정책의 목표 및 추진체계
- 4. 단계별 목표 및 추진방안
- 5.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
- 6.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·운영) 구청장은 법 제2조제3호의 스마트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·운영할 수 있다.

- 제8조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) 구청장은 법 제2조제2호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또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 목적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법 제2조제3호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 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- 제9조(정보시스템의 연계·통합 등)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법 제2조제3호다목의 스마트도시의 관리· 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효율적·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·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0조(데이터의 수집과 활용)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4호의 스마트도시 기술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집·저 장·분석·활용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·활용된 정보를 가공,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법령에 따라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.
- 제11조(연구·개발 등)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과 기술수준의 향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·개발 및 이전·보급
- 2. 산업계·학계·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·개발
- 3.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
- 제12조(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)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 책구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,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1.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
- 2. 제6조의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
- 3.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평가에 관하 사항
- 4.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.
- ④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.
-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 단,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- 1.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. 연구워
- 2. 유관기관, 민간단체, 학계, 산업체의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전문가
- 3.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2명 이내
- 4.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구민
- 5.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⑦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 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 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 -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

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・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4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5.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- 제15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

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16조(수당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7조(실무협의회 구성)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업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와 관계 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제18조(재정 지원)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참여하는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 등을 지원·보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구민과 사회구성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없 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3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제정안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 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홍보디지털과 스마트도시팀 윤지영
연 락 처	2627 - 1547

관계 법령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스마트도시법)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, 관리·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스마트도시"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·정보통신기술 등을 융·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맘한다.
- 1의2. "국가시범도시"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 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.
- 2. "스마트도시서비스"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·교통·복지·환경·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- 3. "스마트도시기반시설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 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·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
 - 나.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,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
 - 다.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 시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 - 라.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,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- 4. "스마트도시기술"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·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.
- 5. "건설·정보통신 융합기술"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

- 여 건설기술에 전자·제어·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.
- 6. "스마트도시건설사업"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, 건축물, 공작물 등을 설치·건축·구축·정비·개량 및 공급·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6의2. "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"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 업을 막한다.
- 7. "스마트도시산업"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,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8. "혁신성장진흥구역"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·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 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.
- 9. "스마트혁신사업"이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스마트 혁신기술·서비스를 제공·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.
- 10. "스마트실증사업"이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기술·서비스를 시험·검증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.
- 11. "스마트규제혁신지구"란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 4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
- 12. "스마트혁신기술·서비스"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·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·복합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 대상)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다.

- 1. 「택지개발촉진법」의 택지개발사업
- 2. 「도시개발법」의 도시개발사업
- 3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의 혁신도시개발사업
- 4.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의 기업도시개발사업
- 5.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
- 6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
- 7.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·광역시·시·군의 도시정 비·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

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제8 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조의2(국가 등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 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다만,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 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1.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
- 2.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에 관한 사항
- 3.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
- 4.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
- 5.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
- 6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 · 운영에 관한 사항
- 7.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
- 8.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- 9.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(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)
- 1() 기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이로서 대통령령이로 정하는 사항
-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립된 도시·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(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)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지사 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- ⑤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.
- ⑥ 삭제
- ⑦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있다.
- 제19조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등)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.
-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 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 ·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에 위탁함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의 관리·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.
-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제19조의2(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)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·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19조의3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)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

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제19조의5(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·통합 등) ① 스마트도시기반 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제2조제3호 다목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시설 (이하 이 조에서 "스마트도시 관리·운영시설"이라 한다)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·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·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·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·통합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21조(개인정보 보호)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, 이용, 제공, 보유, 관리 및 파기(이하 "취급"이라 한다)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한다.
- 제27조(연구·개발 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·지원할 수 있다.
- 1.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·개발 및 이전·보급
- 2. 산업계·학계·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·개발
- 3. 삭제
- 4.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